



가설통로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작업대책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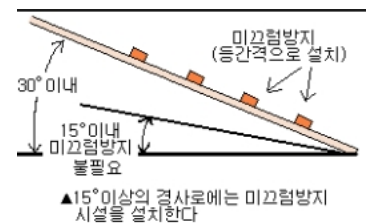
- 외력에 견디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 항상 정비하여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 비탈면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고, 15도 이상시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한다.
- 폭은 최소 90cm 이상,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발판은 폭 40cm 이상, 틈은 3cm 이내로 설치한다.
- 발판은 장선에 결속하고 접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설치 방법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도	30cm	22도	40cm
29도	33	19도 20분	43cm
27도	35	17도	45cm
24도 15분	37	14도	47cm

<미끄럼막이 설치간격>



<미끄럼막이 설치각도>





강관비계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작업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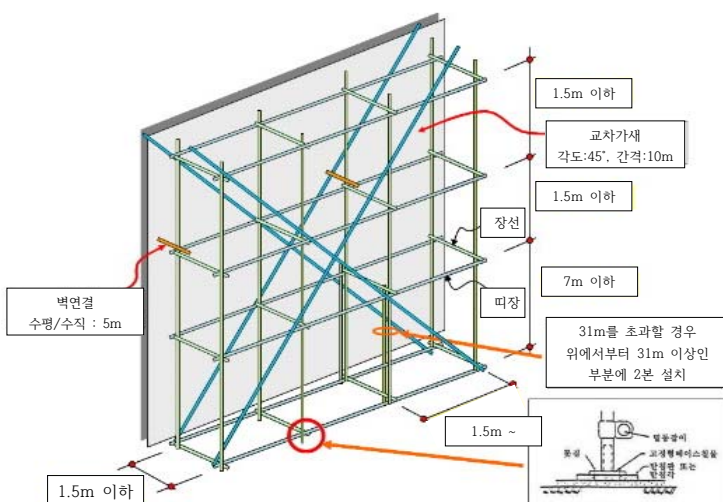


설치 기준

- 조립완료 후 사용허가증을 부착한다.(확인자 표기)
- 기둥간격은 띠장방향 : 1.5m ~ 1.8m, 장선방향 1.5m 이하로 한다.
- 띠장간격 수평재는 1.8m 이하, 첫 번째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 비계기둥간 적재하중은 400kg 이하로 한다.
- 작업발판은 밀설 설치, 고정 철저히 하고 발판단부에는 추락방지조치 실시한다.
- 수직이동통로는 수평방향 30m 이내마다 1개소 설치한다.
- 첫 번째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 지점에 설치한다
- 벽이음은 수직, 수평방향으로 5m 이내마다 설치한다.(단 강관틀비계는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한다)
- 비계가새는 기둥간격 10m 마다 45도 각도로 설치한다.
- 밑발침 철물+밑둥잡이, 깔판(깔목)+밑둥잡이를 견고하게 설치한다.(단, 바닥면이 콘크리트일 경우 깔판 생략이 가능)



설치 방법





지게차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벌칙) 제34조2항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작업대책



안전 기준

- 전조등, 후미등, 브레이크 및 제동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 한다.
- 후방감시카메라 및 후방경광등을 설치하고 충돌 위험지역에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헤드가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상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이도록 한다.
-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지게차 하역운반작업에 사용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손상 및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한다.
-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설치 방법





작업발판, 계단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작업대책



설치 기준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빈틈없이 밀실하게 설치한다.
- 발판간의 틈은 3cm 이하, 비계파이프와 발판간의 틈은 10cm 이하로 한다.
-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한다.
- 경사도가 30도 이상 60도 미만인 경우 가설계단을 설치한다.
- 가설계단은 1단의 높이가 23cm이내, 디딤판은 23cm 이상으로 설치한다.
- 계단의 높이가 100cm를 초과할 경우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가설계단의 폭은 10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설치 방법





이동식크레인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벌칙) 제34조2항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작업대책



안전 기준

- 아우트리거 사용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사용하고 2단 이하로 설치한다.
- 방호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장치)
- 자재 인양시 2줄걸이를 하고 후크해지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
-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지 않도록 한다.
-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한다.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 지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변형되어 있는 혹사클 등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 방법





이동식 비계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작업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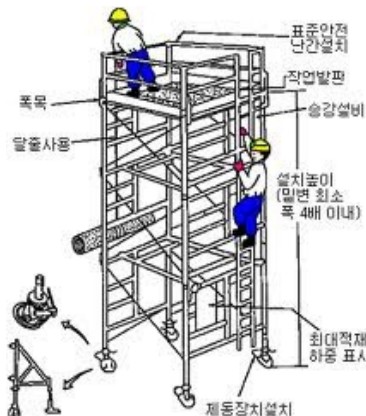


설치 기준

- 비계는 검정품을 사용한다.
- 작업발판은 수평 유지,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닫고 작업을 하거나 추가 작업대 사용금지, 발판 틈새는 10cm 이하로 유지한다.
- 승강설비는 통로폭 30cm 이상, 답단 간격 40cm 이하로 한다.
- 난간대는 기성품만 사용한다.(상부난간대 90 ~ 120cm, 중간대 45 ~ 60cm)
- 사용허가 표지판은 확인 후 부착한다.
→ 확인자 및 최대적재하중(250kg) 표기, 최대적재하중 준수한다.
- 바퀴는 6인치 이상(제동장치부착) 사용한다.
- 아웃트리거는 2단이상 조립시 설치하되 바퀴 부착시에는 모두 설치한다.
- 2단이상 조립시에는 수직방망 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설치 방법





음주 사고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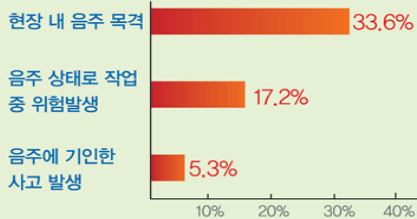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대책



음주사고 관련성

[2013년도 안전보건공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



- 3명중 1명이 일과중 음주를 목격
- 6명중 1명이 음주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위험을 겪거나 본 적이 있음



음주사고 예방대책

- 사업주 실천사항 : 음주상태의 작업자가 없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음주재해예방 교육



순회점검시 음주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음주예방 반영

- 근로자 실천사항 : 음주상태로 절대 작업 금지



현장 내 주류반입 금지



현장내 음주 금지



작업전날 과음 금지



위험성 평가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작업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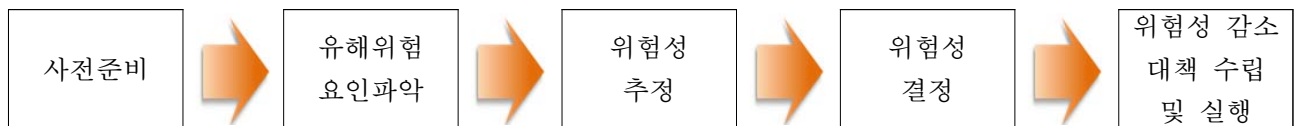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정의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절차



-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 인정

-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
- ☞ 인정서 발급시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고, 또한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음



고소작업차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건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작업대책



설치 기준

- 차량탑재형

- 작업대는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정격하중 초과탑승을 금지한다.
- 아우트리거는 최대한 인출하고, 연약지반시 깔판을 사용하여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한다.
- 장비 제원에 따른 허용 작업반경 준수 및 운전석 방향의 작업은 금지한다.

- 시저형(웬탈)

- 작업대 상부 40cm 높이에 2개 이상의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전도방지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 비상정지장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화기 작업시 작업대 외부 불꽃 비산 방지포 및 소화기를 설치한다.
- 상승된 상태에서 이동이 되지 않도록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 풋스위치 + 손조작시 작동되는 방식을 사용하며 조작반의 각부 스위치는 명칭 및 방향표식을 한다.



설치 방법





굴삭기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벌칙) 제34조2항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작업대책



안전 기준

- 작업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운전원의 안전교육을 실시 한다.
- 작업전 사전안전성(안전장치의 유무 등) 검사 등 적격여부 확인필증 발급 및 부착관리를 한다.
- 장비 회전반경내 인원의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 장비 유도원, 운전원, 근로자 등 작업과 관계된 인원의 신호체계를 통일하도록 한다.
- 후방경고등 및 경고음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즉각 조치하도록 한다.
- 후방감시카메라는 후방감시각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버킷 연결용 유압 커플러의 안전핀을 체결하고 조정식 작동장치(이중안전장치)를 확인하도록 한다.
- 작업과 관계된 지반의 변형, 탈락등이 없도록 상시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 자재 인양시 양중기를 사용하고 부득이 작업시 혹 이탈방지장치를 설치 후 작업토록 한다.



설치 방법





안전난간대 OPS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작업대책



설치 기준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안전난간대의 기둥간격은 2m마다 설치한다.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cm ~ 120cm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 한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단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 안전난간은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한다.
- 계단실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방망은 충분한 강도와 견고성을 가지고 처짐이나 훼손이 없도록 한다.
- 타포린등을 이용하여 추락위험에 대한 경고표지를 하도록 한다.



설치 방법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작성 제공 하여야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72조(과태료) 제41조제1항, 3항을 위반하여 작성 제공하지 않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작업대책



MSDS 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액화석유가스(LPG)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산 소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시 멘 트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레 미 탈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락 카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용 접 봉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취 발 유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등 유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경화제EZ176PTB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에폭시 희석제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페인트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박 리 제 위험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건강성 물질 유해위험성별 따른 조치사항 유해성질: 인화성, 산화성, 건강성 조치사항: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화재 예방, 산화성 물질 취급 시 산화 방지, 건강성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